

(재)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-78호

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」

##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(2차년)

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및 (재)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기술 사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‘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’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5월 14일
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### I 지원개요

#### ① 지원목적

- 지역 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메뉴판식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빠른 시장진입과 기술사업화 기반 확보로 기업성장 촉진

#### ② 지원대상

-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」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경상북도 에너지특화기업

#### ③ 모집기간

- 공고일로부터 ~ 2025. 05. 30.(금) 18:00까지 ※ 사업비 소진 시까지(추가 공고 가능)

#### ④ 지원기간

- 협약 후 ~ 2025. 11. 30. 까지

#### ⑤ 총 지원규모

- 금174,000,000원(금일억칠천사백만원)

### II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5,000만원 한도

## ○ 지원내용

|       | 메뉴판식 지원내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<br>지원금액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사업화지원 | 시제품 제작      | - 시제품제작비(외주 가공비), 재료비, 견본품, 장비 및 기자재 임차비 등 유망 제품의 상품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4,000만원 |
|       | 경영<br>컨설팅   | - IR기획 등 금융 및 경영 컨설팅<br>- BM설계 등 조직개발 및 마케팅 컨설팅<br>※ 1회 20만 원 최대 10회 기준(교통비 별도 지원 없음)        | 최대 200만원   |
|       | 지식재산권<br>획득 | -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선행조사, 회피기술 설계, 국내외 특허출원·등록비<br>- 실용신안, 상표권, 디자인, 의장권 등 등록비                 | 최대 300만원   |
|       | 시험분석·인증     | - 제품 성능 안전성·신뢰성 확보<br>- 전문시험기관 분석 의뢰 비용<br>- 양산품의 신뢰성 및 적합성 심사를 위한 KC, KS, 단체표준 등 규격인증 비용 지원 | 최대 500만원   |
|       | 마케팅         | - 마케팅 (판매전략 수립, 거래망 확보, 홍보활동 등)<br>- 국내외 박람회/전시회 부스 임차비, 참가비, 통역비, 홍보물 등 지원                  | 최대 300만원   |
|       | 디자인         | -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(상품 패키지, 기업 로고 등 제품 고급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300만원   |

※ 컨설팅 1회 기준 : (재)포항테크노파크 내 규정 「수당 지급 기준액」

전문가 활용수당 1시간 200,000원 이하

※ 지원항목 내 중복지원 가능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

## ○ 지원방침

- 지원예산 범위 내, 평가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 지원
- 최근 3년 내 동일/유사한 지원사업 아이টে으로 중복 지원 불가

○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
(단위:원)

| 구분 | 총사업비(A)    | 지원금(B)     | 기업부담금(C)  | 부가가치세(D=A*10%)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금액 | 11,112,000 | 10,000,000 | 1,112,000 | 1,111,200      |
|    | 지원금+기업부담금  | 포항TP지원금    | 기업부담금     |                |

※ 기업부담금은 천 단위에서 올림하여 산정

※ 지원신청서의 TP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재

## ○ 지원방식

- 직접지원 (포항TP → 지원기업 직접 지급)
- 협약 체결 → 사업비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→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

### Ⅲ 신청 및 접수

#### ① 신청기간

- 공고일로부터 ~ 2025. 05. 30.(금) 18:00 까지

#### ② 신청방법

- (재)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(<https://www.ptp.or.kr/>) 회원가입 후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 신청 등록 ※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(hwp)으로 업로드 필수
-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·반환 불가
- 전산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

#### ③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\* 및 기타 증빙자료

| 구분             | 제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방법      | 비 고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청서            | ① 지원 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<br>제출 | 붙임양식 참조<br>(必) |
|                |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<br>동의서 및 약약서 각 1부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기타<br>증빙<br>자료 |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원본대조필(必)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원본대조필(必)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⑤ 2023~2024년 재무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원본대조필(必)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⑥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원본제출(必)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⑦ 기업인증 및 특허 수상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⑧ 수출 실적 증빙서류<br>(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, 수출신고필증 등) |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⑨ 회사 소개서(카탈로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       |
|                | ⑪ 공장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       |

※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#### ④ 문의처

| 담당자    | 연락처          | E-mail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권민재 대리 | 054-223-2266 | kmj@ptp.or.kr |

## Ⅳ 선정절차 및 기준

### ① 선정평가

-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,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전략, 결과 활용계획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
- 서류평가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사업수행 진위여부 검토

| 단계  | 내용                 | 일자(예정)  | 평가자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1단계 | 서류평가 (제출서류 적정성 검토) | ~06.04. | 포항TP 담당자 |
| 2단계 | 발표평가               | 6월 중순   | 외부전문가 5인 |

- ※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, 평가위원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
- ※ 발표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-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
- 평가위원 구성: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

### ② 선정기준

- 점수산정: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
- **종합점수 70점**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- ※ 동일평점 발생 시 재심사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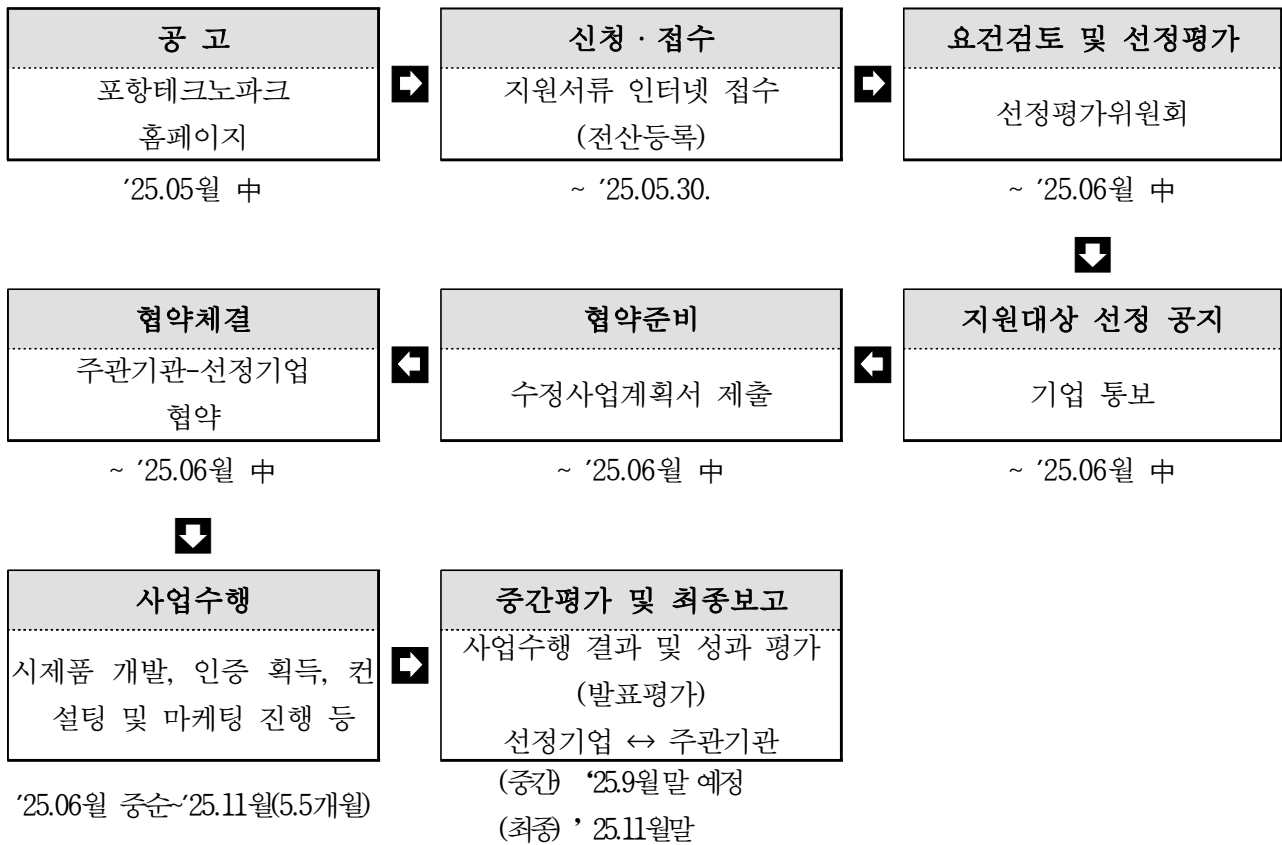
### ③ 평가지표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| 평가내용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목표달성도<br>(40)         | 최종목표 달성 정도       | 25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과정의 적정성        | 15  |
| 운영성과<br>(30)          | 경제적 성과(매출, 고용 등) | 2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적 성과(특허, 인증 등) | 10  |
| 성과활용 및<br>발전성<br>(30) | 사업화 가능성          | 2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 기술개발 가능성      | 10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00 |

### ④ 최종선정

-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 한도를 최종 확정
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

## 5 추진일정(안)



※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, 지원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

## V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### 1 신청제한

- 사업내용이 지원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 과제에 대하여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
-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
- 개인회생·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
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%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
- ※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
- 외감 기업의 경우,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경우

#### 〈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〉

- ▶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,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,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)를 제출해야 함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(유사한 경우 포함)
  -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### 2 지원제외

-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
-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
-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‘기업’의 경우,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(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인정)
-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
 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작성지침」, 「산업통장사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,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(재)포항테크노파크 규정」

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## Ⅵ 선정기업의 의무

-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 - ※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
-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,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Ⅶ 유의사항

### ① 신청 시 유의사항

◆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④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됩니다.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 - ※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## 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 (확인 필수)

## ③ 선정 후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’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